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Product : 원두 커피(Brewed Coffee)

Country : 베트남(Vietnam)

Contents

I. 시장 통계	3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5
2. 무역통계 종합분석	6
3. 품목통계 종합분석	7
II. 통관 및 검역 정보	8
1. 통관 및 검역 절차	11
2. 관세율 정보	14
3. FTA 정보	15
4.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16
※ 참고 문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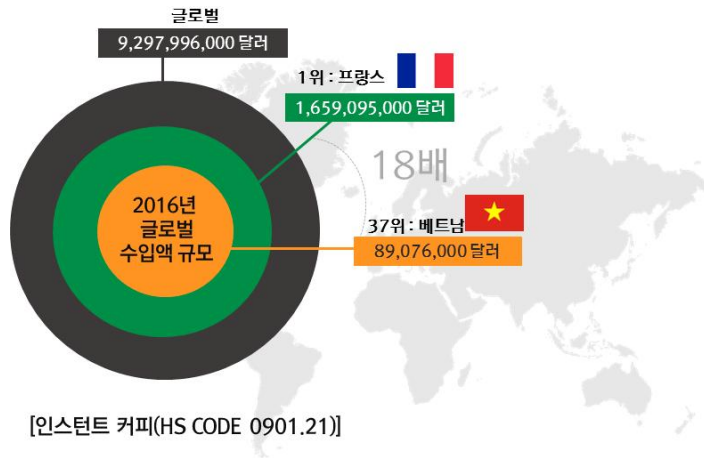


I. 시장 통계

※ 시장 통계 OVERVIEW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2. 무역통계 종합분석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시장 통계 OVERVIEW



2016년 베트남내 HS CODE 0901.21 품목 수입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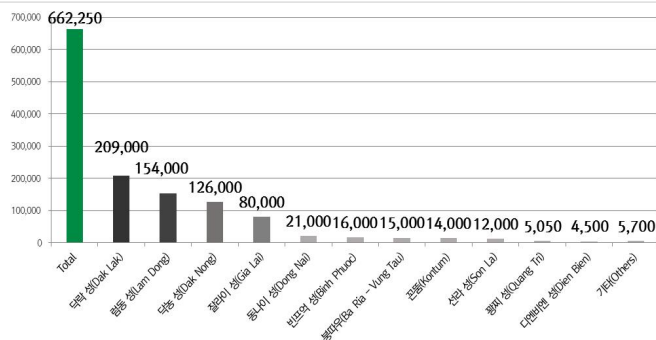
HS CODE 0901.21 품목



※HS CODE 0901.21 품목의 베트남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동 품목의 글로벌 수입 통계와 달리 2016년도 자료가 최신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신 3개년 정보로 확인된 2013 ~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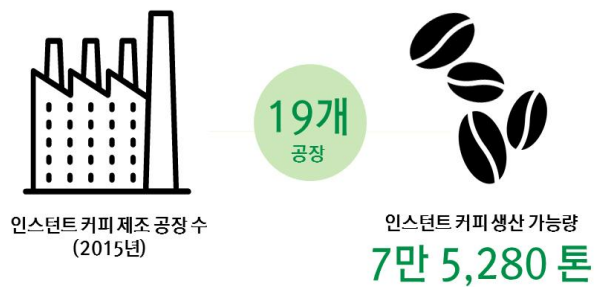
▶ 베트남 내 지역별 커피(Green Coffee) 재배규모

(2015 ~ 2016년 1개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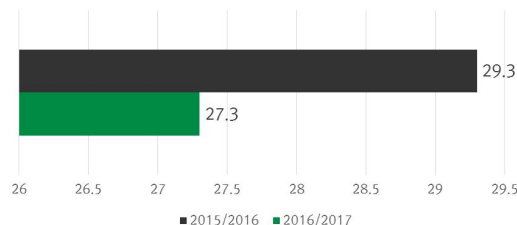
▶ 베트남 내 인스턴트 커피 생산 규모

(2015년 기준)



▶ 베트남 내 커피(Green Coffee) 생산 규모

(2015 ~ 2017년 기준)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원두커피 통계 기준 설정

참여기업 요청에 의해 원두커피 품목의 통계 조사를 추가 진행함. 글로벌 및 베트남의 수입통계 확인을 위해 통계 기준으로써 HS CODE를 설정하고, 조사 대상국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 기준으로써 품목 키워드를 선정함.

수입 통계 기준, HS CODE 0901.21으로 설정

글로벌 및 베트남 내 원두커피의 수요 파악을 위해 전 세계 공통인 HS CODE 6자리 0901.21을 수입통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HS CODE 0901.21 해당 품목은 볶은 커피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됨. 베트남 내 원두커피가 해당 가능한 상세 HS CODE는 분쇄의 여부에 따라 재분류 됨. 의뢰사가 분말형의 제품 외에 분쇄하지 않은 볶은 원두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무역 통계 기준을 상위 분류인 HS CODE 0901.21을 상대로 베트남 수입규모 및 성장률을 조사함

HS CODE 확인 사이트

1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2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베트남 관세청 www.customs.gov.vn

표 1.1 : 원두 커피 조사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분류	조사 항목	통계 기준	
무역 통계	글로벌 수입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901.21
	베트남 수입규모 및 성장률		0901.21
품목 통계	글로벌 시장규모 및 성장률	품목 키워드	Coffee Market Share
	원두커피 시장규모		

표 1.2 : 베트남 내 원두커피 조제품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901.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베트남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901.22.20	잘게 부순 것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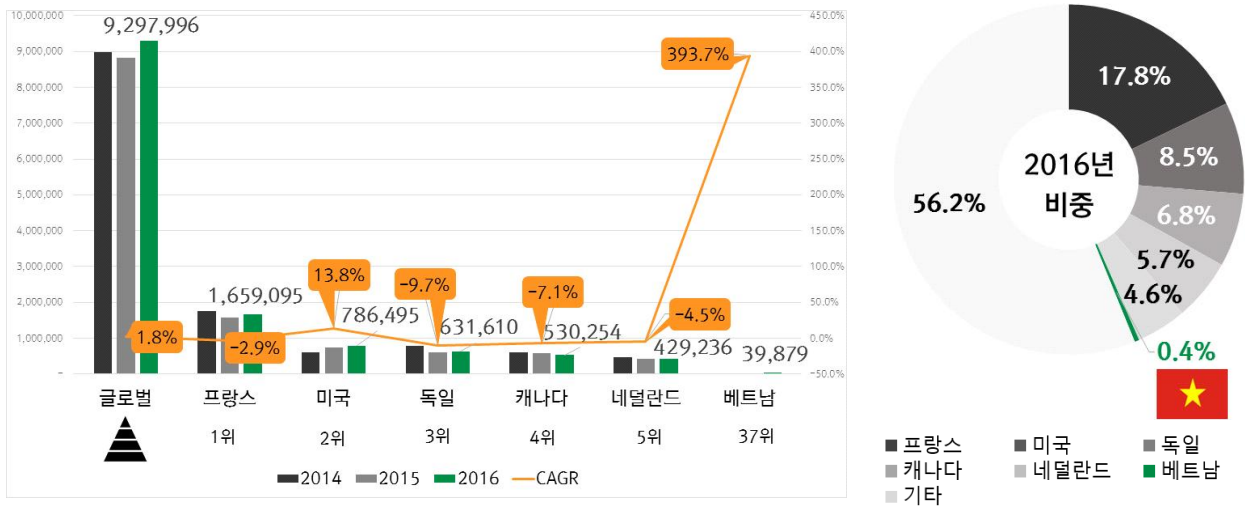
1. 의뢰사 제품에 적합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2. 무역통계 종합분석

글로벌 수입 통계 분석

표 1.3 : 글로벌 HS CODE 0901.21 수입액 규모 및 비중(2014 ~ 201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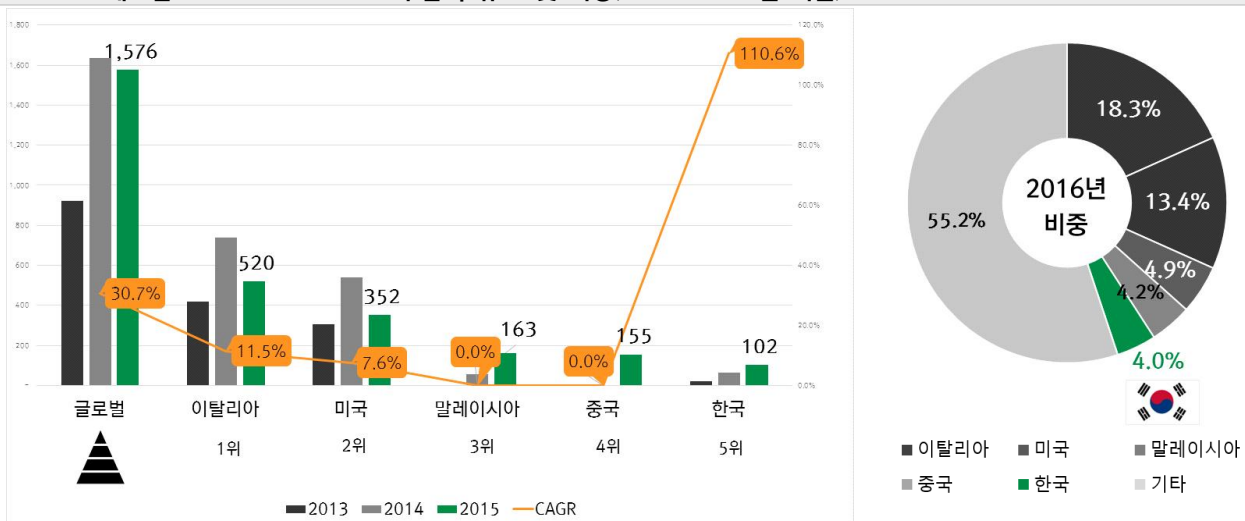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2016년 기준 HS CODE 0901.21 해당 품목의 수입규모는 92억 9,799만 6,000 달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함. 동 기간 기준 수입 상대국 1위에 등극한 프랑스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17.8%를 차지함. 베트남의 경우 전체 중 0.4%를 차지하여 37위권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최근 3개년간 393.7%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함

베트남 수입 통계 분석

표 1.4 : 베트남 HS CODE 0901.21 수입액 규모 및 비중(2013 ~ 2015년 기준)²⁾

(단위 : 천 달러,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2015년 기준 베트남 내 HS CODE 0901.21 해당 품목의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로 52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함.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수입액 규모가 천 달러 이하 혹은 0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평균 성장률 확인이 불가능함.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확인된 수입상대국 상위 5개국 중 한국만이 10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10.0% 내외의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한국산의 수입 규모는 10만 2,000달러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4.0%를 점유하여 5위에 등극함. 2013 ~ 2015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110.6%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 내 해당 품목의 한국산 수요가 상승 중임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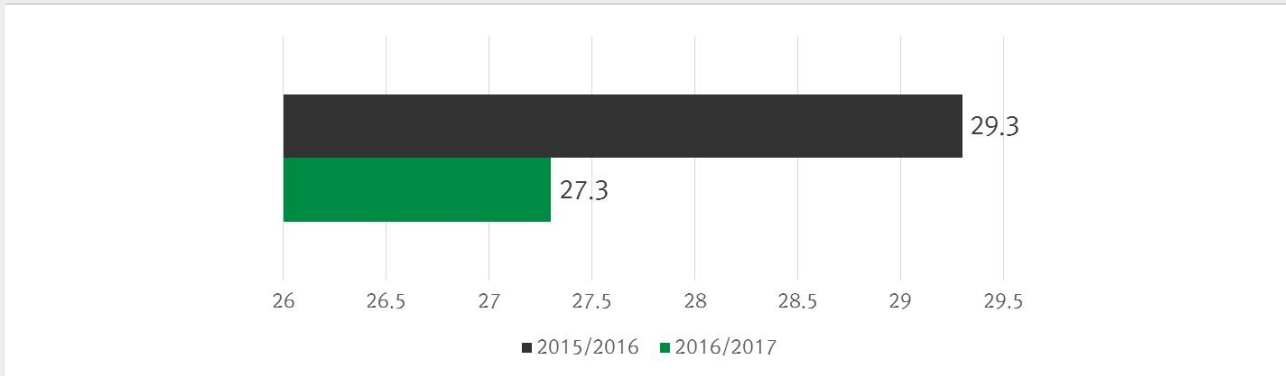
2. HS CODE 0901.21 품목의 베트남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동 품목의 글로벌 수입 통계와 달리 2016년도 자료가 최신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신 3개년 정보로 확인된 2013 ~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3. 품목통계 종합분석

베트남 커피(Green bean) 생산 규모³⁾

표 1.5 : 베트남 내 커피(Green bean) 생산 규모(2015 ~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포=6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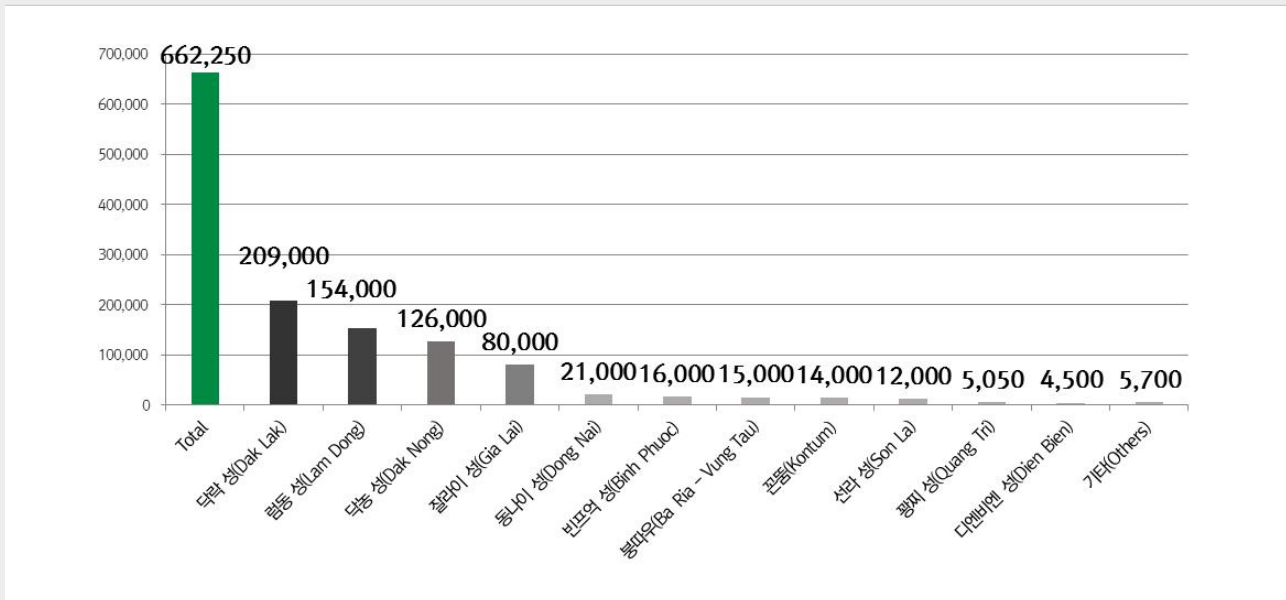
출처 : GAIN Report, 'Vietnam Coffee Annual', 2016.05

- 2015~2016년 1개년 기준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커피(Green bean)량은 총 2,930만 포임. GAIN Report에 의하면 2016 ~ 2017년 1개년 기준 커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하여 약 2,730만 포(175만 8,000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커피 생산량의 감소세는 엘리뇨, 라니냐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에서 기인함

베트남 커피 재배지 규모

표 1.6 : 베트남 지역별 재배지 규모(2015 ~ 2016년 기준)

(단위 : ha)



출처 : GAIN Report, 'Vietnam Coffee Annual', 2016.05

- 2015 ~ 2016년 1개년 기준, 베트남 내에서 커피를 재배 중인 지역의 규모가 66만 2,250 ha로 나타남
- 베트남 내 커피 생산이 활성화된 지역은 총 11개인 것으로 도출됨. 그 중 다락 성이 20만 9,000 ha를 차지하여 최대 커피 재배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의 대표적인 커피 제조회사인 Trung Nguyen Corporation 역시 다락 성의 성도인 부온마투옿(Buon Ma Thuot)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마련함

3. 인스턴트 커피 및 원두 커피와 같이 상세 품목별로 시장규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위 분류인 커피의 시장규모(생산량 및 재배지)를 대체로 조사함

Ⅱ. 통관 및 검역 정보

※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 관세율 정보 OVERVIEW

1. 통관 및 검역 절차
2. 관세율 정보
3. FTA 정보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베트남 통관 검역 절차도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12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수입신고 (전자, 서면신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직접 확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함 - 수입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15일만 효력이 유지되며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함 - 베트남의 전자 통관시스템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함
세관 서류 심사 및 통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품 서류, 수입품에 대한 실질검사 시행 - 물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Green, Yellow, Red stream 3가지 채널로 분류하여 진행 - 그린채널 제품군은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하고 있음
관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기도 하며, 납부 시기는 관세 당국이 지정한 반출 전·후 납부대상에 따라 다름
물품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함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12

관세율 정보 OVERVIEW

2017년 베트남 관세율 정보

HS CODE	품명	관세율	
		기본세율	FTA
0901.21.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30%	0%
0901.22.20	잘게 부순 것	43%	0%

베트남 부가가치세 정보

베트남에서 HS CODE 0901류 경우 부가세 **5% 혹은 10%**가 부과되고 있음

베트남 FTA 세율 정보

2015년 12월 20일 VKFTA 발효로 HS CODE 0901류는 **무관세 적용**

TIP_제품 관세율 확인법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확인하거나,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베트남 사이트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베트남 관세청	www.customs.gov.vn

보다 더 정확한 품목별 HS CODE 및 관세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콜센터' 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사이트명	전화번호
관세율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콜센터	☎ 1380

1. 통관 및 검역절차

해외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 042-472-2197

주베트남한국대사관(관세관)
: +84-4-3831-5110~6

베트남 통관
: +84-4-3944-0833

베트남 산업무역부
: +84-4-2220-2222

수입식품 베트남 수출 전 준비사항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계약서, 선하증권 혹은 항공운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함. 일부 서류에 대해 원본 혹은 베트남어로 서류를 요청하고 때문에 베트남어로 명시된 서류 준비 또한 필요함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함. 한·베트남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이 수입액 기준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 따라서 소액 수입을 진행할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준비를 권유함

통관 진행 시 화물의 실제 상황과 서류상의 차이점 없이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베트남 세관에서는 물품 가격을 본래보다 낮게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 대해 단속이 심하므로 가격 작성에 주의해야 함

곡류와 두류, 신선식품(육류, 수산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에 사전허가를 신청하여 검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함. 가공식품의 경우 일반 수입제품 허가 신고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산업무역부에 수입허가를 신청함. 신청 후, 5일 이내에 수입허가서가 발급되며,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함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Bill of Landing)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화물보관해제주문서 (Cargo Release Order)
- 검수보고서 (Inspection Report)
- 상업송장 (Invoice)
- 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 수입신고서 (Customs Import Declaration)
-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Terminal Handling receipts)

출처 : The World Bank(www.worldbank.org),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1. 수입신고

전자신고(E-customs)를 통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3가지 Channel로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를 진행함

입항지에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업적 계약에 의한 수입 여부, 재수출 용도의 수입인지 여부 수출 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 수입 관련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국경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함

신고 시 첨부해야하는 필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음⁴.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⁵.

Step 02. 세관 서류 심사 및 통관검사

수입대행사의 실적에 따라 그린(Green), 옐로우(Yellow), 레드채널(Red Channel)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진행함. 통관 이후 식물·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짐

그린채널(Green Channel)은 관세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서류제출과 물품검사가 면제됨. 옐로우채널(Yellow Channel)은 물품검사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서류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함. 레드채널(Red Channel)은 서류제출은 물론이고 물품 검사에서 ① 전수 검사 ② 무작위 10%검사 ③ 무작위 5%검사 3가지 중 하나로 진행됨

일반 통관의 경우, 샘플검사는 물량의 10%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관절차 위반, 관세법 위반의 전례가 있는 경우 전수 조사를 시행함

표 2.1 : 베트남 수입통관 채널별 주요 심사 절차

채널(Channel)	필요 심사절차
그린 채널 (Green Channel)	전자신고로 수리 가능하며, 세관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옐로우 채널 (Yellow Channel)	전자서류 혹은 종이서류를 세관에 제출 및 심사 시행
레드 채널 (Red Channel)	종이서류로 제출 및 세관에서 물품 검사 시행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3. 관세 납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품목에 따라 특별 소비세를 납부함. 관세 납부 시기는 관세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반출 전·후 납부 대상으로 나뉨

반출 전 납부 대상은 물품이 정부 지정 소비재인 경우, 설립년도가 1년이 되지 않은 기업, 1회 이상 범법 처벌이력이 있거나 납부 유예 기간 중 범법 처벌이력이 있는 업체로 지정함

Step 04. 물품 반출 및 환급

관세 환급은 환급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관세 환급 시에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세무국에 제출함⁶.

위생 검역에 필요한 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사에 의한 검사보고서(품질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한함)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출처 : 베트남 보건부, 'No.23/2007/QD-BYT 제 6조, 10조', 2007.

표 2.2 : 베트남 검역·검사대상 13개 품목

1. 고기/어류의 조제품
2. 동물성/식물성 유지(有志)
3. 우유 및 각종 유제품
4.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5.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6.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7. 커피, 차, 후추
8.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9. 조미료
10. 음료, 알콜음료, 식초
11. 식품포장재
12. 기능성 식품, 건강보호상품
13. 식품첨가물

출처 : 베트남 보건부,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D-BYT', 2012.

4. 제87/2012/ND-CP, 제196/2012/TT-BTC, 제5559/TCHQ-CNTT를 근거 기준 법령으로 하였음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P121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P132

2. 관세율 정보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 협정 관세율 적용되어 0% 부과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 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 법령정보포털 3.0’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TradeNAV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참여기업의 ‘커피원두’ 는 베트남에서 HS CODE 0901.21(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이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로 분류 가능함

베트남에서 0901류 제품군에 부과하는 기본 세율은 분쇄여부에 따라 적게는 30%, 많게는 43%가 적용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어 2016년 현재 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표 2.3 : 베트남 HS CODE 분류 및 관세

국가	HS CODE	품명	관세율
한국	0901.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한 것	
베트남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901.21.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901.22.20	잘게 부순 것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FTA 정보

HS CODE 0901.21.10, 0901.21.20

한·베트남 VKFTA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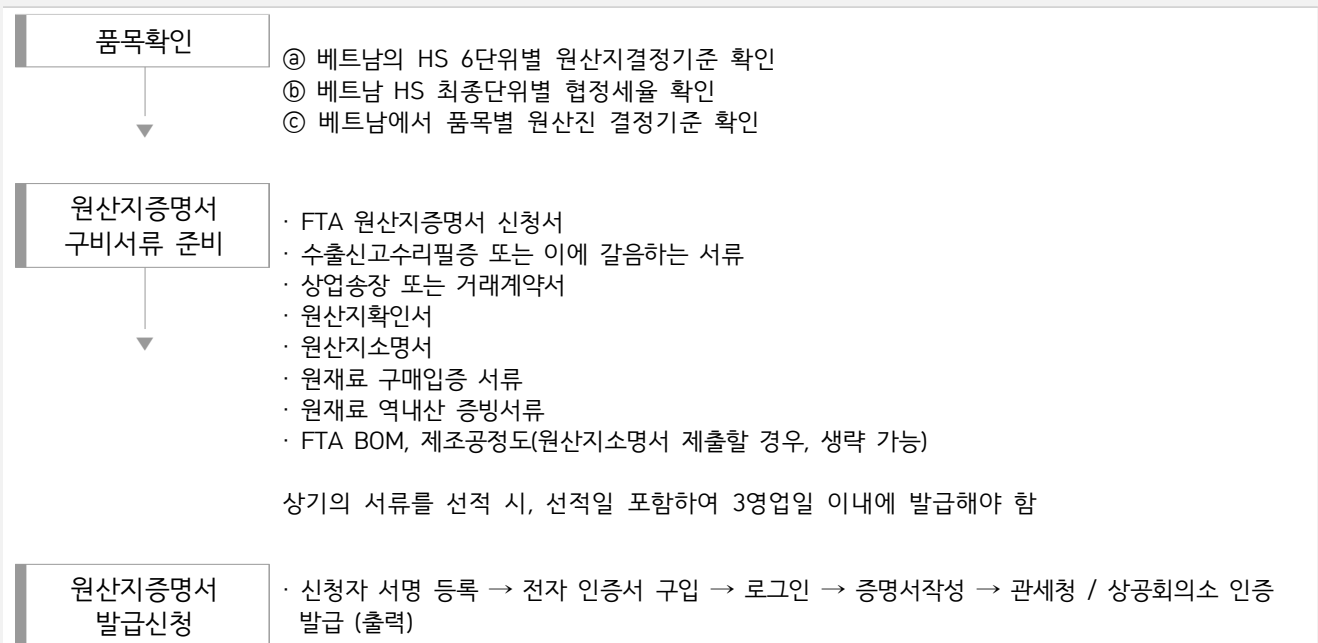
HS CODE 0901 제품군은 한·베트남 FTA 체결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세 양허 유형은 세부 분류에 따라 상이하하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짧게는 10단계, 길게는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가 이루어짐. 그러나 2015년 12월 20일부로 0%의 무관세 혜택이 해당제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음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베트남에서 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원산지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음.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기준이 200달러에서 600달러 이상으로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혹은 베트남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준비가 필요함

수출국 세관이 간접적으로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진행하며, 6개월 내에 검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음.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10개월 이지만 해당 증명서 발급 시, 보관이 5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통용이 가능함. 한·베트남 FTA의 경우,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함⁷⁾.

표 2.4 :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FTA 관세혜택, 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 시 적용 가능

한·아세안 FTA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FTA 체결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베트남 국가는 본국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청이 아닌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길 추천하는 바임

과거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권자의 색상을 문제 삼아 불인정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협정문 내에 고시된 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FTA 특혜 적용됨

세관별로 상이한 베트남 통관 기준

베트남은 세관별로 통관기준이 상이함. 따라서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통관 업무 절차를 숙지하거나 베트남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목적에 따라 관세 납부 유예 가능

통상적으로는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수입 목적 등에 따라 면세 또는 환급 제도 이용이 가능함. 수출 재화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7.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시 회원 등록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이함. 회원일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반면 비회원일 경우 7,000원이라는 증명발급 수수료가 부가됨. 이외 관세양허 및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시에도 최대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로는 서명등록, 원산지증명, 상업송장 등 기타 무역증서, 까르네가 있음. 까르네의 경우 원산지 증명과 달리 지급해야하는 수수료가 고가를 형성하고 있음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Vietnam Coffee Annual	GAIN Report	2016.05
2.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3. Coffee in Viet nam	Euromonitor	2017.02
4. Vietnam Coffee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s (2017 - 2022)	Mordor Intelligence	2017.03

※ 참고 사이트

1. International Trade Centre	www.trademap.org
2.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3.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4. Viet Nam News	vietnamnews.vn
5. 베한타임즈	viethantimes.com
6. Vietnam Net	vietnamnet.vn
7. Lotte Mart	www.lottemart.com.vn
8. Giant Hypermarket	www.giant.com.vn
9. Big C Market Vietnam	www.bigc.vn